

『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현재 용적을 인센티브 목적의 무분별한 공개공지 설치로 공개공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.

또한 공개공지 설치 후 관리미흡으로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공개공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시홍물로 방치되는 공개공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26조제2항에 공개공지의 위원회 심의를 통한 위치
변경 단서를 삭제하고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그
기준을 내실화 하고자 하였고,
안 제25조제2항제9호에 구청장에게 공개공지의 2년에 1회
이상 전문가 점검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
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
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
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